

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6월 20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5월 28일, 운영희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5월 2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4년 6월 20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역할 조항 등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·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위원회의 구성 중 위촉직 위원 성별 관련 규정, 위촉직 위원 임명·위촉 규정 신설 및 위원회 간사 역할 조항 수정(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- 본 개정안은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촉직 구성 및 임명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규정과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.

2) 주요 내용

- 가) 위원회의 구성 중 위촉직 위원 성별 관련 규정, 위촉직 위원 임명·위촉 규정 신설 및 위원회 간사 역할 조항 수정(안 제10조)
 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함
 - 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회 의원을 위촉직으로 신설 구성함

3) 검토 의견

-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의 위원회의 위촉직을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 21조에 따라 구성하고 위촉직 임명 사항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